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차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매주 1회 정례적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례 차관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부 등과 합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

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”를 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(廳)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조(회의 소집) 중 “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.”를 “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례 차관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9조(의안 배부) 중 “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상정하는 의안 등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배석 및 출석발언자) ① (생략)	제4조(배석 및 출석발언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u>	② <u>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(廳)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회의 소집) 차관회의는 정례 (定例)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,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<u>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.</u>	제5조(회의 소집) 차관회의는 ----- ----- -----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. <u>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례 차관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u>
제9조(의안 배부) 행정안전부는 차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임시 차관회의에 <u>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9조(의안 배부) 행정안전부는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정하는 의안 등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<신 설>	<u>제13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2100 - 4084, 4085